

지난 '99년 5월 15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1건,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과 지방채발행행위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.

1. 파주시 동파리 정작마을 입주영농추진 위원회구성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파주시 동파리 정작마을 조성지구내 일단의 구역에 국제 민간기독교 자원봉사단체인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“사랑의 집짓기” 사업의 유치가 가능토록 하고
- 접경지역에 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남북화해를 상징하는 사업의 의미를 부여하고 무주택 영세민의 입주가 가능토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추진위원회의 구성시 “사랑의 집짓기 운동관계자”를 추가로 포함(조례안 제3조 제3항 4호)
-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한 입주자의 선발기준을 일반 입주자 선발요건을 갖춘자중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하도록 정함(조례안 제10조 제3항)

□ 검토의견

- 파주시 동파리 정착마을 조성사업은 6·25 이후 소개되어 그동안 제한된 출입영농을 하고 있던 당해 지역 실향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입주영농이 가능토록 추진한 사업으로
-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'98년 기본계획 수립후, 군사협약, 관련조례 제정, 환경성 검토, 농지협약,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의 1단계 행정조치를 완료하고
- 금번 추경예산에 21억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고 5월중 31억원의 국비(교부세)를 지원받아 2단계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및 입주자를 선발하여 택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말 건축공사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
- 접경지역에 위치한 동 지역에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“사랑의 집짓기 사업”을 유치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부각시켜 국제 관광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
- 동 사업의 추진으로 소요되는 부지의 토지매입비와 기반조성등 투자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가 또는 사업 당사자를 부담케 하여 우리시의 추가부담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
○ “사랑의 집짓기 사업”의 근본취지가 무주택 영세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무주택 영세자들이 출입영농자들과 동일 마을에 단지화하여 입주케 됨으로써 자칫 이웃간 이질감과 위화감 조성등의 우려가 있을것으로 예측됨.

○ 또한 동조례 제10조의 입주자의 자격요건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 제2항 제2호의 “입주할 주택은 자기부담으로 건축할 능력이 있는자” 제3호의 “영농을 할 여건을 갖춘자”로 한 요건에 충족될 수 있는 무주택 영세자가 있을지 의문시 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조문으로 사료됨.